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48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의자 : 박용갑 · 김영호 · 황정아
이병진 · 박홍배 · 소병훈
이해식 · 추미애 · 박상혁
황명선 · 박지원 · 허성무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
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